

# 심사보고서

충청북도교육청 교직원 주택임차지원기금 설치·운용 및  
지원 조례안

# 심사보고서

의안 번호	721
----------	-----

2024. 10. 18.(금)  
교육위원회

## 1. 심사경과

가. 발의자: 이정범 의원 등 7인

나. 발의일자: 2024년 10월 2일

다. 회부일자: 2024년 10월 2일

라. 상정일자: 2024년 10월 11일

(제421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2차 교육위원회)

마. 주요내용

○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 심사의결(원안가결)

## 2. 제안설명 요지

(제안설명자: 이정범 의원)

### 가. 제안이유

○ 충청북도교육청 교직원 관사의 안정적인 공급과 기존 관사의 노후에 따른 교직원의 수요 충족에 어려움이 있어 공급자 중심의 주거지원 체계 개선하고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주택임차비 지원을 통해 교직원의 주거 안정 및 복지 증진을 위해 주택임차기금 설치를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 나. 주요내용

- 기금의 설치 목적에 관한 사항(안 제1조)
- 교직원의 정의에 관한 사항(안 제2조)
- 기금의 설치 및 존속기한에 관한 사항(안 제3조)
- 기금의 조성 및 용도에 관한 사항(안 제4조 및 안 제5조)
-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사항(안 제6조)
- 교직원 주택임차지원기금운용심의위원회 설치에 관한 사항(안 제7조)
- 회계관계공무원에 관한 사항(안 제8조)
- 지원대상 및 지원한도액에 관한 사항(안 제9조 및 안 제10조)
- 운영 세칙에 관한 사항(안 제11조)

## 3. 검토보고 요지

(수석전문위원 신원호)

### 가. 조례 제안이유 검토

- 본 조례안은 기존의 관사 운영이 수요를 충족하기 어렵고, 노후화, 단체생활형 관사 구조 등에 따른 만족도 저하 등의 문제가 발생함에 따라 주택임차비를 지원하여 주거 복지를 위하여 충청북도교육감 소속 교직원들의 주거안정을 도모하고자 충청북도교육청 교직원 주택임차지원기금 설치·운용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
- 일반행정직 공무원들과 달리 교육청 소속 교육공무원들은 도내 인사이동으로 거주지를 벗어나는 인사 발령 후, 1달 이내에 발령지의 주거를 마련해야 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고, 특히 임용 후 5년 이내의 저연차 공무원 의원면직의 원인인 낮은 처우와 업무 부담뿐만 아니라 인구소멸 지역으로 분류되는 지역 발령으로 주택 임대를 위한

비용 마련 부담도 영향을 끼침

- 이를 위해 충청북도교육청은 도내 전지역에 관사를 제공하고 있으나 입주를 원하는 공무원의 수에 비해 관사의 수가 현저히 부족하여 근무지 거주자의 어려움이 더해짐

<2022~2024년도 충청북도교육청 지역별 관사 입주자 대기 현황>

지역	청주	충주	제천	보은	옥천	영동	진천	음성	단양	괴산 증평	소계	
입주 신청자	2022	27	91	104	31	62	110	33	39	41	22	560
	2023	7	297	132	42	65	102	49	20	41	27	782
	2024	6	200	145	33	58	94	44	22	40	24	666
관사 입주 자	2022	27	22	16	6	42	67	4	5	40	5	234
	2023	7	68	16	36	43	58	4	3	40	8	283
	2024	6	46	18	33	43	58	7	4	40	5	260
입주 대기 자	2022	0	69	88	25	20	43	29	34	1	17	326
	2023	0	229	116	6	22	44	45	17	1	19	499
	2024	0	154	127	0	15	36	37	18	0	19	406

- 또한, 현재 제공되고 있는 관사는 단체 생활형 관사의 형태로 개인의 주거 패턴이 변화되어 개인형 관사 요구를 충족하지 못함
- 경기도교육청과 동두천양주교육지원청은 정주 여건 마련을 위해 LH 협약을 맺고 임차를 통해 임대아파트 지원을 하고 있음 그러나 충북 도내의 대부분 지역은 인구소멸 지역으로 임대아파트 지원의 어려움이 있음. 비슷한 지역적 환경의 강원도, 전라남도, 경상북도 교육청에서는 공무원주택임차기금을 설치하여 주거안정기금을 안정적으로 확대 운영하고 있음

<타시도 교육청 주택임차지원기금 관련 조례>

연번	시·도	조례명	제·개정일
1	경북	경상북도교육청 공무원주택임차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2022.4.21. 일부개정 (1998.1.12. 제정)
2	전북	전라남도 교직원 주택임차지원기금 조례	2021.10.28. 일부개정 (1994.7.11. 제정)
3	강원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교직원 주택임차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2024.6.7. (제정)

- 따라서 본 조례안은 도 전체 지역 발령으로 이동이 많은 교육공무원들의 특수성을 고려하고, 충청북도교육청 교직원의 업무의 안정성 확보와 후생복지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주택임차지원기금을 설치·운영하기 위해 제정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검토**

- 본 조례안은 총 11개 조항의 본칙과 부칙으로 구성하여 제정 목적, 지원 대상과 지원 사항, 신청 방법, 지원 금액, 심의위원회 선정 및 기능 등에 대하여 명확히 규정하고 시행일 당시 진행 중인 직무관련사건에 대하여도 적용하도록 하고 있음
- 안 제3조(기금의 설치 및 존속기한)에서는 「지방자치단체 기금 관리법」 제4조제3항에서 기금의 존속기한의 5년을 초과할 수 없다는 조항에 근거하여 충청북도교육청 교직원 주택임차지원기금의 존속기한을 2029년 12월 31일까지로 하고,
- 안 제4조에서는 기금의 재원으로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전입금, 기금운용수익금, 그 밖의 수입금으로 조성한다고 규정함
- 안 제5조에서는 교직원에 대한 주택 월세 보증금 또는 전세금의 대여, 그 밖에 기금의 관리와 운용에 필요한 경비로 기금의 용도를 정

하고 있으며

- 안 제6조에서는 교육감은 기금을 금융기관에 예탁하고 충청북도교육청 금고에 별도의 계좌를 설치하여 예치·관리하고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운용해야 함을 정하고 있음
- 안 제7조(교직원 주택임차지원기금운용심의위원회 설치)에서는 「지방자치단체 기금 관리법」 제13조에 따라 주택임차지원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설치하고 「충청북도교육청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른 충청북도교육청 통합재정안정화기금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대신하기로 정함
- 안 제9조에서는 교직원 중 근무기관이 위치한 시·군지역 내 무주택자로 지원대상을 한정하고,
- 안 제10조에서는 1인당 지원 한도액은 5천만원으로 하되, 매년 기금 형편을 고려하여 조정할 수 있다고 규정함

## 다. 종합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교원의 지위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25조<sup>33)</sup>에서 교원 관사의 노후화 정도 현황에 대해 실태조사를 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고,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26조<sup>34)</sup>에서는 농어

---

33) 1) 제25조(교원의 근무환경 실태조사) ① 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4. 3. 26.>

1. 교원(「도서·벽지 교육진흥법」 제2조에 따른 도서·벽지에서 근무하는 교원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관사의 출입문 보안장치, 방범창, 폐쇄회로 텔레비전 및 비상벨 등 안전장치 설치 현황
2. 교원 관사의 노후화 정도 현황
3. 교원과 경찰관서 간의 긴급연락체계 등 안전망 구축 현황
4. 교원의 성별 현황
5. 그 밖에 관할청이 교원의 근무환경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34) 2) 제26조(농어촌학교 교직원의 우대)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어촌학교 교직원이 높은 긍지와 사명감을 가지고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인사상의 우대, 연수 기회의 우선적 부여, 근무부담의 경감 등 근무여건 개선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촌 교직원에게 학생의 교육 및 생활지도에 전념할 수 있도록 주거의 편의를 우선적으로 제공하여야 한다는 규정에 근거하여 관사의 안정적 공급의 부족과 기존 관사의 노후에 따른 교직원의 수요 충족에 어려움이 있고,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주택 임차비 지원을 통해 교직원의 주거안정 및 복지 증진과 근무지에서 안정적인 업무 수행을 위한 후생복지 제도로써 입법의 취지, 필요성 및 타당성이 인정됨

- 또한, 「법령 입안 및 심사 기준」 과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에 비추어 볼 때, 전체적인 조문 체계와 개정 주요 내용이 법령에 위배 되는 사항이 없고, 집행부 담당 부서와의 협의 및 조례안 예고 등의 입법 절차와 방법을 준수함으로써 전체적으로 문제가 없는 적절한 입법 조치라 판단됨
- 다만, 제9조에서 지원대상이 근무기관이 위치한 시·군지역 내 무주택자로서 근무지의 관사 및 주택 수급의 정도에 따라 경력별, 지역별, 등록지와 근무지가 다른 경우 등 우선 순위를 정해야 하며, 지원금의 안정적 환수를 위한 보증보험 가입 등 안전장치를 필수적으로 규정해야함

---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어촌학교 교직원이 농어촌에 거주하면서 학생의 교육 및 생활지도에 전념할 수 있도록 주거편의를 우선적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어촌학교에 근무하는 교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0. 7. 23.]

4. 질의 및 답변요지: “생략”

5. 토론요지: “생략”

6. 심사결과: “원안가결”

7. 소수의견요지: “없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없음”

9. 심사보고서 첨부서류:

- 충청북도교육청 교직원 주택임차지원기금 설치·운용 및 지원 조례안

## 충청북도교육청 교직원 주택임차지원기금 설치·운용 및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59조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에 따라 충청북도교육청 교직원 주택임차지원기금을 설치하고 그 관리와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교직원”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충청북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 소속 공무원
2. 「충청북도교육청 교육공무직원 채용 및 관리 조례」 제2조에 따른 교육공무직원

제3조(기금의 설치 및 존속기한) ① 교육감은 교직원의 주거안정 및 복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재원을 확보·운용하기 위하여 충청북도교육청 교직원 주택임차지원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②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9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존속기한이 경과한 이후에도 기금을 존치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제4조(기금의 조성)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전입금

2. 기금운용수익금

3. 그 밖의 수입금

제5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사용한다.

1. 교직원에 대한 주택 월세 보증금 또는 전세금의 대여

2. 그 밖에 기금의 관리와 운용에 필요한 경비

제6조(기금의 관리·운용) ① 교육감은 기금을 금융기관에 예탁하여 안정성

· 수익성을 고려하고 효율적으로 운용해야 한다.

② 교육감은 기금을 충청북도교육청 금고에 별도의 계좌를 설치하여 예치

· 관리하고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운용해야 한다.

제7조(교직원 주택임차지원기금운용심의위원회 설치) ① 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용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3조에 따라

교육감은 교직원 주택임차지원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 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에 관한 사항

2. 기금 운용의 성과 분석에 관한 사항

3. 기금의 조성 및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기금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

③ 제2항 각 호의 심의는 「충청북도교육청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른 충청북도교육청 통합재정안정화기금심의위원회에서

대신한다.

제8조(회계관계공무원) ① 교육감은 기금의 효율적 관리·운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회계관계공무원을 지정한다.

기관의명칭	구분	기금관리직명	지정관직
본청	명령기관	기금운용관	행정국장
		분임기금운용관	재정복지과장
	출납기관	기금출납원	재산담당사무관
청주교육지원청	명령기관	분임기금운용관	재정과장
	출납기관	기금출납원	재산담당주무자
교육지원청	명령기관	분임기금운용관	행정과장
	출납기관	기금출납원	재산담당주무자

② 제1항에 따른 회계관계공무원은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장부를 갖추어 두고 기금에 관한 증명서류를 따로 관리해야 한다.

제9조(지원대상) 교직원 중 근무기관이 위치한 시·군지역 내 무주택자로 한다.

제10조(지원한도액) 1인당 지원한도액은 5천만원으로 하되, 매년 기금 형편을 고려하여 조정할 수 있다.

제11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 기금 운용 및 지원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교육감이 정한다.

## 부 칙

이 조례는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관계법령

### □ 「지방자치법」

**제159조(재산과 기금의 설치)** ① 지방자치단체는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경우나 공익상 필요한 경우에는 재산(현금 외의 모든 재산적 가치가 있는 물건과 권리를 말한다)을 보유하거나 특정한 자금을 운용하기 위한 기금을 설치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재산의 보유, 기금의 설치·운용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 □ 「지방자치단체 기금 관리기본법」

**제1조(목적)** 이 법은 지방자치단체에 설치하는 기금의 관리 및 운용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 기금 운용의 공공성과 지방재정의 효율성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기금”이란 지방자치단체가 특정한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59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운용하는 자금을 말한다. <개정 2015. 7. 24., 2021. 1. 12.>

[전문개정 2011. 5. 30.]

**제4조(기금의 존속기한)** ① 지방자치단체가 기금을 신설하여 운용하려는 경우에는 기금의 존속기한을 해당 조례에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운용되는 기금과 「지방공기업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지역개발을 위한 기금은 존속기한을 명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5. 7. 24.>

② 기금의 존속기한은 기금의 설치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으로 설정하여야 하며, 그 기간은 5년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15. 7. 24.>

③ 존속기한을 넘어서까지 기금을 존치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조례를 개정하여 5년의 범위에서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방재정법」 제33조제9항에 따른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신설 2015. 7. 24.>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금의 존속기한 및 통합·폐지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한 5년 단위의 기금정비계획을 매년 작성하여 이를 「지방재정법」 제 33조제1항에 따른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신설 2015. 7. 24.>

[전문개정 2011. 5. 30.]

**제5조(기금의 관리 및 운용원칙)**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금을 그 설치 목적과 지역 실정에 맞도록 관리·운용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금자산의 안정성·유동성·수익성 및 공공성을 고려하여 기금자산을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운용하여야 한다.

**제6조(기금의 관리 및 운용)** ① 기금은 세계현금(歲計現金)의 수입·지출·보관의 절차, 공유재산 및 물품의 관리·처분의 예 또는 채권 관리의 예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금의 관리 및 운용에 관한 사무의 일부를 소속 공무원에게 위임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임 또는 위탁받은 사무를 담당하는 자의 책임에 관하여는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개정 2015. 7. 24., 2021. 1. 5.>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재정법」에 따른 지방채 발행 한도액 또는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거나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금액의 범위에서 기금(「지방자치법」 제159조에 따라 설치하는 기금은 제외한다) 조성을 위한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5. 7. 24., 2017. 7. 26., 2020. 1. 29., 2021. 1. 12.>

④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8조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의 집행과 기금의 지출 등 기금관리업무를 원활히 수행하는 데 필요한 기금관리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하여야 한다. <신설 2015. 7. 24., 2017. 7. 26.>

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4항에 따른 기금관리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제8조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의 집행과 기금의 지출 등 기금의 관리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신설 2015. 7. 24.>

⑥ 그 밖에 제8조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의 집행과 기금의 지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5. 7. 24.>

[전문개정 2011. 5. 30.]

**제13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 ① 지방자치단체는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기금별로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심의위원회를 통합하여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1. 제8조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보고서의 작성
2. 제14조에 따른 기금 운용의 성과 분석
3.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중요 사항으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심의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③ 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1. 5. 30.]

## □ 「충청북도교육청 교육공무직원 채용 및 관리 조례」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15.3.27.>

1. “교육공무직원”이란 「유아교육법」, 「초·중등교육법」, 「지방공무원법」 등에 따른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로서 각급 기관에서 근무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무기계약근로자: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

나. 기간제근로자: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

다. 단시간근로자: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그 사업장에서 같은 종류의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 근로자의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에 비하여 짧은 근로자

2. “각급 기관”이란 충청북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소속 본청, 직속기관, 교육지원청과 그 소속기관 및 공립학교를 말한다.

3. “공립학교”란 「유아교육법」 제7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과 「초·중등교육법」 제3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설립·경영하는 학교를 말한다.

## □ 「충청북도교육청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6조(기금의 운용 심의) ① 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용하기 위하여 충청북도교육청 통합재정안정화기금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보고서 작성에 관한 사항
2. 기금운용의 성과분석에 관한 사항
3. 기금의 조성 및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4. 기금운용계획의 정책사업 지출금액의 범위에서 세부항목 지출금액 변경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중요 사항으로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삭제 <2023. 11. 3.>

[시행일: 2024. 1. 1.] 제6조제3항

제7조(위원회 구성) ① 심의위원회의 위원은 위원장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3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한다.

② 위원장은 부교육감이 되고, 부위원장은 기획국장이 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당연직 위원: 부교육감, 기획국장, 교육국장, 행정국장, 예산과장
  2. 위촉직 위원: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 중 교육감이 위촉하는 사람
    - 가. 교육재정 분야에 전문지식과 경험을 가진 전문가
    - 나. 기금운용 또는 기금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전문가
- 다. 충청북도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⑤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하며, 남은 기간이 6개월 미만의 경우에는 위촉하지 않을 수 있다.

[본조신설 2023. 11. 3.] [시행일 2024. 1. 1.]

제8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심의위원회를 대표하고, 심의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본조신설 2023. 11. 3.] [시행일 2024. 1. 1.]

**제9조(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장은 심의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려면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일시, 장소, 심의 안건을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회의를 긴급히 소집할 필요가 있거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 3일 전까지 구두로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알릴 수 있다.

④ 위원장은 심의 안건이 긴급을 요하거나 심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적위원 과반수의 서면심의서 제출과 제출한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본조신설 2023. 11. 3.] [시행일 2024. 1. 1.]

## 충청북도교육청 교직원 주택임차지원기금 설치·운영 및 지원 조례안 비용추계서

### 1. 사업개요

- 공급자 중심의 관사 지원 행정에서 수요자 중심의 주택임차비 지원으로 주거 지원체계의 개선 필요
- 주택임차비 지원을 위한 기금의 연차별 조성 및 운용·관리 필요

### 2. 비용 발생 요인

- (세입)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전입금, 기금운용 수익금, 그 밖의 수입금 등 재원
- (세출) 무주택 교직원의 주택 임차 보증금, 전세금 대여 등

### 3. 관련조문

**제4조(기금의 조성)**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전입금
2. 기금운용수익금
3. 그 밖의 수입금

**제5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사용한다.

1. 교직원에 대한 주택 임차 보증금 또는 전세금의 대여
2. 그 밖에 기금의 관리와 운용에 필요한 경비

### 4. 비용 추계결과

가. 추계의 전제

- 1) 조례 제2조에 따른 대상자를 전제로 함

■ 최근 3년간 공동관사 입주 희망자 중 미입주자

(단위: 명)

연도별	2022 (연도별누적)	2023 (연도별누적)	2024 (연도별누적)	계	평균
희망자	560	782	666	2,008	669
입주자	234	283	260	777	259
대기자	326	499	406	1,231	410

- 주민등록상 주거지와 근무지가 다르며, 근무지에 주택이 없는 공무원, 교육공무직원

나. 추계 결과: 5년간 35,000,000천원 소요

(단위: 명, 백만원)

연도별	2025	2026	2027	2028	2029	계
인 원	200	200	100*	100	100	700
지원액	10,000	10,000	5,000	5,000	5,000	35,000

\* 임차기금 시행 3년차부터 상환이 시작되며, 상환 비율을 50%로 산정하여 지원액 감액 조정함

- 1) 대부기간은 2년으로 대부 3년차부터 50% 상환 조건으로 추계
- 2) 100% 상환시 대부 가능액 증가

- 2년, 2회(총6년)까지 대부 연장 가능하므로 상환액 감소 예정

다. 재원조달방안: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전입금 및 기금운용수익금, 그 밖의 수입금

5. 연도별 비용 추계표 : 붙임

## < 연도별 비용 추계표 >

(단위 : 천원)

구 분	1차년도 (2025년)	2차년도 (2026년)	3차년도 (2027년)	4차년도 (2028년)	5차년도 (2029년)	계
세 입	10,000,000	10,000,000	5,000,000	5,000,000	5,000,000	35,000,000
자체수입	10,000,000	10,000,000	5,000,000	5,000,000	5,000,000	35,000,000
세 출	10,000,000	10,000,000	5,000,000	5,000,000	5,000,000	35,000,000
제5조제1호 (주택임차보증금, 전세금 대여)	10,000,000	10,000,000	5,000,000	5,000,000	5,000,000	35,000,000
제5조제2호 (그 밖에 사업)						
재원 조달	10,000,000	10,000,000	5,000,000	5,000,000	5,000,000	35,000,000
의존 재원	소 계					
	국고보조금					
	보통교부금					
	특별교부금					
자체 수입	소 계					
	자체수입	10,000,000	10,000,000	5,000,000	5,000,000	5,000,000
지방채						
기 금						
기 타 (차입금 만자 예비비 등)						

※ 2025년도 본예산 편성 후 기금 집행